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 산 검 사 의 견 서

거창군결산검사위원

결 산 검 사 의 견 서

거창군수 귀하

2018년 4월 18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거창군 의회로부터 거창군 2017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대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18년 3월 30일부터 2018년 4월 18일까지(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의 결산검사는 2017회계연도 거창군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의 준수여부를 검사하고, 거창군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세입, 세출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거창군이 작성하여 제출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첨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결산(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포함),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거창군 결산 검사 위원

대표위원 최 광 열
검사위원 송 재 명
검사위원 임 종 호
검사위원 이 종 문

목 차

Ⅰ. 결산검사 경과 ---------- 3

Ⅱ. 결산검사 총괄 현황 ---------- 4

1. 거창군 재정의 개황 ---------- 4

2. 세입·세출 결산 ---------- 7

3. 기금의 결산 ---------- 20

4. 재무제표의 결산 ---------- 22

5. 성과보고서 ---------- 25

6.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 27

Ⅲ.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 30

1. 세입·세출 결산 분야 ---------- 30

2. 성과보고서 분야 ---------- 37

3. 수범사례 ---------- 41

Ⅳ.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내용 ---------- 42

Ⅴ. 금고의 결산 ---------- 48

Ⅰ. 결산검사 경과

1. 검사기간 : 2018. 3. 30. — 2018. 4. 18.(20일간)

2. 결산검사위원

직 위	성 명	담 당 업 무	비고
대표위원	최 광 열	재무제표 결산 및 검사 총괄	
위 원	송 재 명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 및 개선 권고사항	
위 원	임 종 호	성과보고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위 원	이 종 문	세입세출 및 금고결산	

3. 결산검사 세부일정

구 분	일 자 별	결 산 검 사 내 용	비고
군 본청	3.30~4.10	재정상황 파악 및 결산내용 적정여부 검토	
군 의회	4.11~4.12	세입세출 결산내용 검토	
직속기관	4.13~4.16	세입세출 결산내용 검토	
사 업 소	4. 17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 검토	
	4. 18	결산검사 총괄정리	

4. 결산검사 진행

- 결산검사는 관련 장부 및 증빙서 등을 검사하고, 필요 시 관계공무원의 출석 답변요구 및 현지 확인조사 실시
- 결산검사 자료는 대표위원을 통하여 자료요구
-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위원간 토의

Ⅱ. 결산검사 총괄 현황

1. 거창군 재정의 개황

(1) 재정여건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기금의 수입지출) 및 결산상 잉여금 등 결산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추이

(단위 : 천원,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일반회계	세 입	554,648,770	498,526,361	514,855,237	523,685,518	610,800,628
	세 출	445,698,576	367,822,087	383,476,529	369,344,239	398,098,997
	결산상잉여금	108,950,194	130,704,274	131,378,708	154,341,279	212,701,631
특별회계	세 입	84,460,549	64,293,672	67,563,402	66,373,684	73,151,701
	세 출	50,201,268	34,668,943	35,733,977	31,027,202	33,820,555
	결산상 잉여금	34,259,281	29,264,729	31,829,425	35,346,481	39,331,146
기금	수 입	12,261,992	13,749,971	14,027,841	14,188,402	14,149,637
	지 출	1,152,616	909,612	792,113	802,697	584,462
	결산상 잉여금	11,109,376	12,840,359	13,235,728	13,385,705	13,565,175
총 계	세입(수입)	651,371,311	576,570,004	596,446,480	604,247,604	698,101,966
	세출(지출)	497,052,460	403,400,642	420,002,619	401,174,138	432,504,014
	결산상 잉여금	154,318,851	173,169,362	176,443,861	203,073,465	265,597,952

○ 2017회계연도의 재정규모가 늘어난 것은 일반회계 세수증가로 세입이 늘어난데 기인한 것이며, 세출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여 결산상 잉여금은 265,597,952천원으로 전년대비 31% 증가하였으며,

세출을 주민수로 나눈 『1인당 재정지출규모』는 현년도에 6,981,066원이다.

전년대비 재무제표 요약분석

(단위 : 천원, %)

구 분	재 정 상 태			재 정 운 영			비 고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수익	총비용	운영차액	
2017년	2,160,618,104	32,819,442	2,127,798,662	471,981,217	332,988,600	(138,992,617)	
2016년	1,985,454,374	40,329,093	1,945,125,281	410,472,829	323,968,427	(86,504,402)	
증 감	175,163,730	(7,509,651)	182,673,381	61,508,388	9,020,173	(52,488,215)	

○ 2017년 순자산이 전년 대비 182,673,381천원증가 재정 상태는 9.4% 개선되었으며, 재정운영 결과 운영차액은 전년대비 52,488,215천원(60.7%) 증가하여 총 자산은 2,160,618,104천원으로 전년대비 8.8%가 증가하였다.

거창군 자치단체의 지난 5년간 채무의 추이는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채무 추이

(단위 : 천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비고
자치단체 채무계 a(b+c+d)	756,000	0	0	0	0	
공채 b		0	0	0	0	
차입금 c	756,000	0	0	0	0	
채무부담행위 d		0	0	0	0	
지방공기업 채무 e		0	0	0	0	
채무총합계 f(a+e)	756,000	0	0	0	0	

○ 2013년도 756,000천원의 채무를 상환한 후 2014년도부터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2) 재정건전성

❍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운영 규정(훈령)에 의하면 예산대비 채무비율 등 지표를 주의단계나 심각단계에 있는지를 알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위험 판단 지표

관점	재정지표	산정방식	주의 기준	심각(위기) 기준
채무 관리	① 예산대비채무비율	지방채무 잔액 / 총예산	25%초과	40%초과
	② 채무상환비 비율	지방채무 상환액 / 일반재원	12%초과	17%초과
세입 관리	③ 지방세 징수액현황	당해연도 월별 누적 징수액 / 최근 3년 평균 월별징수액	50%미만	0%미만
자금 관리	④ 금고잔액 현황	당해연도 분기말 잔고 / 최근 3년 평균 분기말 잔고	20%미만	10%미만
공기업	⑤ 공기업 부채비율	부 채 / 순 자 산	400%초과	600%초과
	⑥ 개별공기업 부채비율			

❍ 재정자립도 : 7.7%

❍ 재정자주도 : 55.5%

거창군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6개 기준에 해당되는 항목이 없어 재정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다 하겠음

2. 세입·세출 결산

(1) 총 괄

2017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 기금을 검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결산상 잉여금 (C =A-B)
합 계	**661,594,876**	**698,101,966**	**432,504,014**	**265,597,952**
일반회계	576,360,055	610,800,628	398,098,997	212,701,631
특별회계	71,353,793	73,151,701	33,820,555	39,331,146
공기업특별회계	39,839,927	40,604,511	22,016,288	18,588,223
상수도사업	15,035,386	15,635,812	8,470,454	7,165,358
하수도사업	24,804,541	24,968,699	13,545,834	11,422,865
기타특별회계	31,513,866	32,547,190	11,804,267	20,742,923
의료보호기금	835,763	834,800	751,002	83,798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392,668	404,504	392,596	11,908
주차장관리	593,566	585,158	134,411	450,747
산업단지조성사업	5,294,623	6,067,327	1,790,753	4,276,574
수질개선	5,538,860	5,516,102	5,062,790	453,312
댐주변지역지원사업	689,749	692,875	609,384	83,491
농업발전기금	18,168,637	18,446,424	3,063,331	15,383,093
기 금	**13,881,028**	**14,149,637**	**584,462**	**13,565,175**

(단위 : 천원)

회 계 별	현년도 채무상환	이 월 액(D)				
		명시	사고	계속비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합 계		**44,176,654 (200,000)**	**28,909,993**	**10,185,664**	**3,918,730**	**164,841,736**
일반회계		38,945,568	25,953,530	10,185,664	3,847,097	133,769,772
특별회계		5,231,086 (200,000)	2,956,464		71,633	31,071,964
공기업특별회계		4,632,418	2,846,049			11,109,756
상수도사업		438,455	755,403			5,971,500
하수도사업		4,193,963	2,090,646			5,138,256
기타특별회계		598,688 (200,000)	110,415		71,633	19,962,208
의료보호기금					67,687	16,11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72	11,835
주차장관리						450,747
산업단지조성사업		220,689 (200,000)	30,970			4,024,915
수질개선		377,979			3,874	71,459
댐주변지역지원사업			79,445			4,047
농업발전기금						15,383,093
기 금		-	-	-	-	-

※ ( )는 자금 없는 이월임

○ 본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결산액은 698,101,966천원으로 예산액 661,594,876천원보다 36,507,090천원이 더 수납되었다.

전년대비 93,854,362천원(15.5%)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교부세(34.3%)이고, 총 698,101,966천원 중 자체수입과 이전수입의 비율은 각각 7.98%, 60.66%이다.

○ 세출은 세입결산액의 61.4%인 432,504,014천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65,597,952천원이다.

이 중 명시이월비 44,176,654천원, 사고이월비 28,909,993천원 및 계속비 10,185,664천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3,918,730천원을 공제한 집행잔액에서 현년도 채무상환으로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순세계 잉여금은 164,841,736천원이다.

○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액과 자금 없는 이월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한바 적정하게 처리되었으며 결산검사 결과 결산상잉여금(기금포함)은 265,597,952천원임이 확인된다.

○ 세출은 전년대비 31,329,876천원(7.8%) 증가하였으며, 총 661,594,876천원의 예산현액 중 432,504,014천원이 집행되어 집행율은 65%로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모두 확인되었다.

(2) 일반회계

가. 세 입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결산액	576,360,055	613,215,014	610,800,628	646,233	2,414,386
결산확인액	576,360,055	613,215,014	610,800,628	646,233	2,414,386
차 액	0	0	0	0	0

○ 세입결산 개요

➤수납액 610,800,628천원은 예산액의 105.6%로서 34,440,573천원이 초과 수납 되었으며, 이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9.6%로 높아졌으며 불납결손액은 646,233천원으로서 지방세수입,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무재산 569,360천원, 행방불명 12,988천원, 시효소멸 38,612천원, 기타 25,273천원으로 발생되었는바, 본 연도 세입의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결산확인액과 결산액은 일치되었다.

○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상의 출납액과 부합되었다.

○ **불납결손처분**은 646,233천원이 발생되었으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처분한 것으로 검사결과 적정하게 검토되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천원)

수납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610,800,628	610,800,628	0

연도별 세입현황 분석

(단위 : 천원)

연도별	예 산 액	징 수 결 정 액	수 납 액	불 납 결손액	예산대비 징수결정액	징수결정 대비 수납액	징수결정 대비 불납결손액
2017	576,360,055	613,215,014	610,800,628	646,233	99.6%	106.0%	0.11%
2016	511,522,341	527,141,570	523,685,518	280,741	103.1%	99.3%	0.05%
증감	64,837,714	86,073,444	87,115,110	365,492			

○ 예산대비 징수결정액이 증가된 주된 이유는

지방세는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 및 주행세분 증가(기름값 상승)에 따라 자동차세 증가 및 사업장 증가에 따른 법인소득,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세수증대이며,

○ 세외수입은 부가가치세 일부를 전환하는 지방소비세 세입증가, 생활안정기금,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폐지에 따른 기금이관을 들 수 있다.

○ 지방교부세증가분은 2017년 정부추가경정예산 확정에 따라 추가교부(일자리 확대) 및 세출자체노력도(행사축제성 경비절감, 지방보조금 절감 인센티브)등이 수납되었다.

○ 불납결손액은 전년도 280,741천원 보다 365,492천원이 증가한 646,233천원이다. 불납결손의 주된 사유는 무재산 569,360천원, 행방불명 12,988천원, 시효소멸 38,612천원, 기타 25,273천원이다.

세목별 세입 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	미수납액
합 계		**576,360,055**	**613,215,014**	**610,800,628**	**646,233**	**2,414,386**
지방세	소 계	21,184,196	27,927,035	26,748,369	112,954	1,178,666
	주민세	760,675	985,619	952,049	793	33,570
	재산세	4,455,120	5,094,420	4,967,990	874	126,430
	자동차세	7,780,113	10,564,068	10,145,380	2,215	418,688
	담배소비세	3,618,590	4,430,120	4,430,121	0	0
	지방소득세	4,113,497	5,878,327	5,705,515	15,087	172,811
	지난년도수입	456,201	974,481	547,314	93,985	427,167

세외 수입	소 계	11,881,755	20,318,529	19,082,809	533,279	1,235,720
	재산임대수입	138,609	203,903	188,753	0	15,150
	사용료 수입	1,484,586	1,263,194	1,255,989	0	7,205
	수수료 수입	1,467,600	1,488,152	1,481,107	0	7,045
	사업수입	1,202,000	1,259,029	1,258,914	0	115
	징수교부금수입	465,071	744,682	744,682	0	0
	이자수입	2,270,738	2,684,600	2,684,598	0	2
	재산매각수입	200,000	466,948	466,948	0	0
	부담금	10,000	7,711	7,711	0	0
	과징금및과태료	303,537	784,350	562,337	12,224	222,013
	기타수입	4,189,614	10,796,339	10,229,436	0	566,903
	지난연도 수입	150,000	619,621	202,334	521,055	417,287
지방교부세		221,816,000	234,611,287	234,611,287	0	0
조정교부금 등		13,800,000	27,123,832	27,123,832	0	0
보조금		148,730,666	146,707,474	146,707,474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58,947,438	156,526,857	156,526,857	0	0

○ 세입의 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전체 세수의 4.4%인 26,748,369천원이, 세외수입은 3.1%인 19,082,809천원이 수납되었고,

지방교부세는 38.4%인 234,611,287천원, 조정 교부금 등은 4.4%인 27,123,832원, 보조금 등은 24.1%인 146,707,474천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5.6%인 156,526,857천원이 수납되었다.

나. 세 출

일반회계 세출결산 확인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결산액	505,735,241	576,360,055	398,098,997	75,084,761	103,176,297
결산확인액	505,735,241	576,360,055	398,098,997	75,084,761	103,176,297
차 액	0	0	0	0	0

○ 세출결산 개요

➤예산액은 505,735,241천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70,624,814천원이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은 576,360,055천원이었고, 세출예산 전용액은 예산액의 0.11％인 539,441천원이었으며,

전용의 주요내용은 세출 예산과목이 변경됨에 따라 과목 해소기준에 맞추기 위한 경우 등으로 예산이용 건수는 없으며 이체는 예산액의 0.01%인 66,627천원으로서 목재문화체험장 시설물관리 업무 이관으로 조정한 것이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9.1%에 해당하는 398,098,997천원이었으며 이월액은 75,084,761천원으로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38,945,567천원 계속비 이월 10,185,664천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5,953,530천원이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군도 확포장과 도로유지 관리사업의 토지보상 협의지연과 대형 계속사업의 추진 지연 등의 사유에 기인한 것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7.9%에 해당되는 103,176,297천원이었으며 불용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집행 잔액, 예산절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 등에 기인한 것이다.

○ **집행잔액 과다발생**

➤예산은 당해연도 업무계획을 근거로 합리적으로 편성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편성된 예산은 당해 연도에 100%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별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여 총 예산액의 69.1%인 398,098,997천원을 집행하고, 이월금을 제외한 103,176,29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총 세입결산액 대비 21.9%인 133,769,772천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천원)

지출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398,098,997	398,098,997	0

세출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다.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도 지출액	2017회계연도			전년대비증감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율	금액	비율
합 계	**369,344,239**	**576,360,055**	**398,098,997**	**69.1**	28,754,758	**7.8**
일반공공행정	30,264,111	37,830,505	32,535,687	86	2,271,577	7.5
공공질서및안전	4,366,314	7,758,329	6,266,547	80.8	1,900,233	43.5
교 육	6,366,259	4,516,580	4,403,238	97.5	△1,963,021	△30.8
문화및관광	11,922,424	20,446,199	15,911,068	77.8	3,988,643	33.5
환경보호	35,928,903	45,371,373	41,269,664	91	5,340,761	14.9
사회복지	81,127,257	95,245,193	90,673,765	95.2	9,546,508	11.8
보 건	6,375,484	9,300,982	6,304,543	67.8	△70,940	△1.1
농림해양수산	81,818,318	109,421,413	75,389,518	68.9	△6,428,800	△7.9
산업·중소기업	7,629,068	7,701,792	3,692,253	47.9	△3,936,815	△51.6
수송및교통	18,106,833	35,127,711	20,837,585	59.3	2,730,752	15.1
국토및지역개발	33,653,149	71,756,827	46,409,796	64.7	12,756,647	37.9
예비비		71,727,846			0	
기 타	51,786,119	60,155,304	54,405,334	90.4	2,619,214	5.1

○ 본 회계연도의 기능별 지출액은 사회복지 90,673,765천원, 농림해양수산 75,389,518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46,409,796천원 등의 순이며,

전년대비 가장 많은 금액이 증가된 것은 공공질서 및 안전 43.5%이며, 산업단지 입주업체 지원금 감소 등으로 산업·중소기업은 전년대비 51.6%가 감소하였다.

(3) 특별회계(직영 공기업포함)

가. 세 입

특별회계 세입결산 확인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71,353,793	73,784,401	73,151,701	42,526	632,700
공기업특별회계	39,839,927	40,686,132	40,604,511	17,231	81,621
상수도	15,035,386	15,684,888	15,635,812	6,258	49,077
하수도	24,804,541	25,001,244	24,968,699	10,973	32,544
기타특별회계	31,513,866	33,098,269	32,547,190	25,295	551,079
의료보호기금	835,763	834,800	834,8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392,668	404,503	404,503		
주차장관리	593,566	1,136,237	585,158	25,295	551,079
산업단지조성사업	5,294,623	6,067,327	6,067,327		
수질개선	5,538,860	5,516,102	5,516,102		
댐주변지역지원사업	689,749	692,875	692,875		
농업발전기금	18,168,637	18,446,424	18,446,424		
결산확인액	71,353,793	73,784,401	73,151,701	42,526	632,700
차 액	0	0	0	0	0

○ 세입결산 개요

➤수납액 73,151,701천원은 예산현액의 102.5%로서 1,797,908천원이 초과 수납 되었으며 이는 주로 상수도 및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전년도 이월금에 기인한 것이다.

○ **불납결손처분은** 42,526천원이 발생되었으나 검사결과 처분사유가 적정하였고, 각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각 회계의 결산 확인액과 일치 되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천원)

수납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73,151,701	73,151,701	0

각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다.

나. 세 출

특별회계 세출결산 확인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 계	65,127,947	71,353,793	33,820,555	8,387,550 (200,000)	29,145,687
공기업특별회계	34,955,046	39,839,927	22,016,288	7,478,467	10,345,171
상 수 도	13,131,248	15,035,386	8,470,454	1,193,858	5,371,075
하 수 도	21,823,798	24,804,541	13,545,834	6,284,609	4,974,097
기타특별회계	30,172,901	31,513,866	11,804,267	909,083 (200,000)	18,800,516
의료보호기금	835,763	835,763	751,002		84,76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30,000	392,668	392,596		72
주차장관리	593,566	593,566	134,411		459,155
산업단지조성사업	4,345,943	5,294,623	1,790,753	451,659 (200,000)	3,052,211
수질개선	5,538,860	5,538,860	5,062,789	377,979	98,092
댐주변지역지원사업	679,290	689,749	609,384	79,445	920
농업발전기금	18,149,479	18,168,637	3,063,331		15,105,306
결산확인액	65,127,947	71,353,793	33,820,555	8,387,550 (200,000)	29,145,687
차 액	0	0	0	0	0

※ ( ) 자금없는 이월액 포함

○ 세출결산 개요

➤예산액은 65,127,947천원 이었으나 전년도이월액 6,225,846천원으로 예산현액은 71,353,793천원이었고,

세출예산 전용액은 총21건 539,441천원으로서, 이는 주로 밭농업직불금 등의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며,

예산의 이체는 총8건 66,627천원으로서, 이는 목재문화체험장 시설물 관리의 업무 이관으로 발생하였음.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47.4%에 해당하는 33,820,555천원이며 불용액이 40.9%인 29,145,687천원으로 과다한 것은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의 적립금이 15,105,306천원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데 기인하였으며,

➤이월액은 8,387,550천원이 발생되었고 이는 주로 사업계획 변경, 환경영향평가, 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에 기인한 것이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천원)

지출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33,820,555	33,820,555	0

세출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다.

(4)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본 연도의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 이월비는 다음과 같다.

계속비이월·명시이월, 사고이월 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비고
	내역	금액	내역	금액	내역	금액	
합 계		10,185,664		44,376,654 (200,000)		28,909,993	
일반회계		10,185,664		38,945,568		25,953,530	
일반공공행정				623,119		1,107,853	
공공질서및안전				400,000		663,024	
문화및관광				1,743,377		1,838,759	
환경보호		198,478		2,479,520		564,136	
사회복지				50,000		494,381	
보건				2,365,007			
농림해양수산		9,987,187		6,735,431		7,623,499	
산업·중소기업				3,170,000		36,477	
수송및교통				11,132,471		1,596,328	
국토및지역개발				10,246,643		12,023,573	
기타						5,500	
기타특별회계				798,668 (200,000)		110,41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420,689 (200,000)		30,970	
댐주변지역지원사업						79,445	
수질개선				377,979			
농업발전기금							
공기업특별회계				4,632,418		2,846,049	
상수도사업				438,455		755,403	
하수도사업				4,193,963		2,090,646	

○ 검사결과 계속비는 총26건 10,185,664천원, 사고이월비는 28,909,993천원, 명시이월비는 44,376,654천원으로 확인되었다.

3. 기금의 결산

본년도 기금의 결산은 다음과 같다.

기 금 현 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 이 월	수 입					지 출	당해연도말 현재액
		출연금	보조금	융자 회수금	예탁금 상 환	이자, 기타		
합 계	13,385,705	250,000	228,100	37,646		248,186	14,149,637	13,565,175
사회복지기금	4,026,403			37,646		68,870	4,132,920	4,062,979
식품진흥기금	65,562		5,000			945	71,506	66,506
재난관리기금	884,139	250,000	223,100			14,690	1,371,929	1,026,850
중소기업육성 기금	6,584,745					111,573	6,696,318	6,560,226
아림예술제진흥 기금	500,318					7,628	507,946	500,446
옥외광고정비 기금	235,219					25,909	261,129	260,279
체육진흥기금	1,089,319					18,571	1,107,889	1,087,889

○ 거창군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7종으로써, 2017회계 연도말 현재의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13,385,705천원에 당해 연도 조성액 763,932천원을 더하고 사용액 584,462천원을 공제한 13,565,175천원이다.

최근 5년간의 기금 조성·사용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최근 5년간 기금 조성·사용 현황 >

(단위: 천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5년 평균 증가율
전년도말 조성액	10,483,586	11,109,376	12,840,358	13,235,728	13,385,705	6.3
당해연도 조성액	1,778,406	2,640,594	1,187,483	952,674	763,932	-19.0
당해연도 사용액	1,152,616	909,612	792,113	802,697	584,462	-15.6
당해연도말 조성액	11,109,376	12,840,358	13,235,728	13,385,705	13,565,175	5.1

거창군 기금은 최근 5년간 평균 5.1%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는 기금조성에 비해 기금사용의 증가율이 약 3.4%p 낮기 때문이다.

4. 재무제표의 결산

2017회계연도 거창군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정상태 및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2017	2016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2,160,618,104	1,985,454,374	175,163,730	8.8%
Ⅰ. 유 동 자 산	271,426,724	216,229,061	55,197,663	25.5%
Ⅱ. 투 자 자 산	4,576,826	4,476,826	100,000	2.2%
Ⅲ. 일반유형자산	90,198,953	69,712,648	20,486,305	29.4%
Ⅳ. 주민편의시설	304,820,576	274,685,641	30,134,935	11.0%
Ⅴ. 사회기반시설	1,488,851,617	1,419,834,278	69,017,339	4.9%
Ⅵ 기타비유동자산	743,409	515,920	227,489	44.1%
부 채	32,819,442	40,329,093	(7,509,651)	(18.6%)
Ⅰ. 유 동 부 채	6,578,570	12,295,079	(5,716,509)	(46.5%)
Ⅱ. 장기차입부채	-	-		
Ⅲ. 기타비유동부채	26,240,873	28,034,014	(1,793,141)	(6.4%)
순 자 산	2,127,798,662	1,945,125,281	182,673,381	9.4%
Ⅰ. 고정순자산	1,664,902,478	1,564,553,326	100,349,152	6.4%
Ⅱ. 특정순자산	14,089,617	13,901,701	187,916	1.4%
Ⅲ. 일반순자산	448,806,567	366,670,254	82,136,313	22.4%

○ 2017회계연도말 거창군의 자산은 2,160,618,104천원으로 전년도 1,985,454,374천원보다 175,163,730천원(8.8%) 증가하였는데 이는 비유동성 자산의 증가에 의한 것이며,

유동자산 총액은 271,426,724천원으로 작년에 비해 55,197,663천원(25.5%) 증가하였는데, 이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비유동성 자산의 총액은 1,889,191,381천원으로 전년도 1,769,225,313천원보다 119,966,068천원이 증가하였다.

○ 본 회계연도말 부채는 32,819,442천원으로 전년도 40,329,093천원보다 7,509,651천원(18.6%) 감소하였는데 유동부채가 6,578,570천원이고 기타유동부채가 26,240,873천원으로 비 유동부채가 총 부채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 유동부채 총액은 6,578,570천원으로 전년대비 5,716,509천원(46.5%) 감소하였으며 기타비유동부채의 총액은 26,240,873천원으로 전년대비 1,793,141천원(6.4%)이 감소하였다.

재정운영 및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2017	2016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Ⅰ. 사업순원가 (가 - 나)	125,363,755	123,373,096	1,990,659	1.6%
가. 사업총원가	261,708,332	251,985,353	9,722,979	3.9%
나. 사업수익	136,344,577	128,612,257	7,732,320	6.0%
Ⅱ. 관리운영비	58,839,589	55,857,779	2,981,810	5.3%
Ⅲ. 비배분비용	12,440,680	16,122,746	(3,684,614)	(22.8%)
Ⅳ. 비배분수익	29,099,803	25,696,259	3,403,544	13.2%
Ⅴ. 재정운영순원가 (Ⅰ+Ⅱ+Ⅲ-Ⅳ)	167,544,221	169,659,910	(2,115,689)	(1.2%)
Ⅵ. 일반수익	306,536,837	256,164,312	50,372,525	19.7%
Ⅶ. 재정운영결과 (Ⅴ - Ⅵ)	(138,992,616)	(86,504,402)	(52,488,214)	60.7%

○ 기능별 재정운영표에 의하면 2017회계연도 거창군의 사업 순원가는 125,363,755천원이고 관리운영비(58,839,589천원) 비배분비용(12,440,680천원) 및 비배분수익(29,099,803천원)을 가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167,544,221천원이다.

한편 재정운영 순원가 167,544,221천원에서 일반수익 306,536,837천원을 차감한 2017년 회계연도 거창군의 재정운영 결과는 (-)138,992,616천원이다.

○ 재정운영 결과 (-)138,992,616천원으로 전년도의 (-)86,504,402천원보다 (-)52,488,214천원(60.7%) 감소하였는데 이는 일반수익 중 주로 정부 간 이전수익 54,292,423천원이 전년대비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5. 성과보고서

○ 거창군에서는「지방재정법」제5조(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제2항 및 제44조의2 제1항,「지방회계법」제15조 및 제16조의 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 2에 따라 2017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 본 회계연도의 **「힐링과 승강기의 도시, 행복한 거창」** 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략목표 20개→정책사업 목표 71개→단위사업 215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

(단위 : 개, %)

부 서 명	전 략 목표수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달성 여부		
		개 수	지표수(A)	초과달성, 달성(B)	미달성	달성률 (A/B)
계	20	71	215	177	38	82.3
의회사무과	1	1	2	1	1	
기획감사실	1	1	6	5	1	
민원봉사실	1	3	13	13	0	
행정과	1	2	11	11	0	
기업지원과	1	4	10	5	5	
재무과	1	2	9	9	0	
복지정책과	1	8	25	25	0	
안전총괄과	1	3	12	10	2	
경제교통과	1	6	13	8	5	
문화관광과	1	8	16	12	4	
산림과	1	2	11	9	2	

환경과	1	5	14	13	1	
건설과	1	5	13	10	3	
도시건축과	1	5	10	5	5	
농업기술센터	1	6	23	18	5	
보건소	1	1	9	8	1	
평생교육센터	1	5	8	7	1	
수도사업소	1	2	4	2	2	
체육시설사업소	1	1	4	4	0	
거창시건사업소	1	1	2	2	0	

○ 거창군의회에 제출된 성과계획서를 바탕으로 작성된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민원봉사실 등 6개부서는 100%를 달성한 반면 기획감사실 등 14개 부서에서는 미달성이 38건으로 82.3% 달성에 거치는 결과를 보였다.

○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성과보고서 작성기준에 따르면 사업목적과 명확히 연계된 결과 지향적 지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충실한 성과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성과지표의 설정근거가 미흡하거나 측정방법이 타당하지 않은 지표들이 확인되었고,

○ 성과분석에도 목표치 미달성 및 초과달성 지표에 대한 원인분석이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실적자료를 근거로 제시한 사례들이 확인되어 원칙적으로 재정성과관리제도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과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전반의 적정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6.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1) 채 권

채 권 현 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발 생 액	당해연도 상환소멸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합 계	**4,883,974**	**220,151**	**213,945**	**4,890,180**
일 반 회 계	4,488,827	-	-	4,488,827
특 별 회 계	5,250	-	-	5,250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5,250	-	-	5,250
기 금	389,897	220,151	213,945	396,103
사회복지기금	389,897	220,151	213,945	396,103

○ 채권의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4,890,180천원으로 전년도 말 잔액 4,883,974천원에서 당해 연도 220,151천원이 발생하고, 213,945천원이 소멸되었으며, 당해연도 소멸액 213,945천원 중 이행기간도래액은 4,535천원, 기한미도래액은 209,410천원으로

이는 전년도말 현재액 이행기한미도래액 중 당해 연도에 이행 기한이 도래한 금액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당해 연도 말 채권은 4,879,344천원으로 보증금채권 145,474천원, 융자금채권 4,733,870천원이며, 보증금채권은 전화예치금 12,474천원과 회원권 133,000천원, 융자금채권은 공무원학자대여금 4,343,353천원 등이다.

(2) 채무현황 : 해당사항 없음

(3) 공유재산

본 년도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다음과 같다.

공유재산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합 계		730,864,710	75,822,190	6,770,697	799,916,203
행정재산	공공용재산	599,698,373	64,423,145	4,711,013	659,410,505
	공용재산	100,980,275	9,486,943	827,584	109,639,634
	기업용재산	-	-	-	-
	보존재산	3,299,112	398,118	-	3,697,230
	소 계	703,977,760	74,308,206	5,538,597	772,747,369
일 반 재 산		26,886,950	1,513,984	1,232,100	27,168,834

○ 2017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799,916,203천원으로 그중 행정재산이 772,747,369천원, 일반재산이 27,168,834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69,051,49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공유재산 중 토지가 27,124필지 46,546,198㎡로 287,861,890천원이며, 건물은 571동 208,992㎡, 151,724,665천원이다.

○ 그 중 토지는 도로개설, 하천정비,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1,353,182㎡, 5,832,582천원,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신축 등 건물은 35,598㎡, 20,576,154천원이 증가된 반면, 소규모 공유재산 매각 35건 14,971㎡, 492,929천원 등이 감소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물　품

물품증감 및 현재액의 결산은 다음과 같다.

물품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취　득	처　분	
수　　량	866	84	57	893
금　　액	6,265,392	1,395,180	418,971	7,241,602

○ 검사결과 현재 물품은 7,241,602천원으로 신규취득 등 1,395,180천원, 매각·폐기 등 418,971천원으로

물품은 전년도 보다 976,210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사유는 미니버스 5대, 471,542천원 등 각종 차량, 냉·전산장비 등의 신규 취득으로 발생된 것이다.

Ⅲ.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세입세출 결산분야》

1.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현 황)

○ 우리군의 2017회계연도 총 세입은 683,952,329천원, 총 세출은 431,919,553천원이며, 잉여금은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공제한 252,032,777천원 임.

(단위: 천원)

구 분	세입(A)	세출(B)	잉여금(A-B)			
			소계	이월금	보 조 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계	683,952,329	431,919,553	252,032,777	83,272,311	3,918,730	164,841,736
일반회계	610,801,628	398,098,997	212,701,631	75,084,761	3,847,097	133,769,772
공기업특별회계	40,604,511	22,016,288	18,588,223	7,478,467	0	11,109,756
기타특별회계	32,547,190	11,804,267	20,742,923	709,083	71,633	19,962,208

* 회계별 총계금액임

○ 세입에 비해 세출의 증가율이 약 5.1%p 낮고, 잉여금의 경우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5년 평균 증가율
세입(A)		639,109,319	562,820,033	582,418,639	590,059,203	683,952,329	1.7
세출(B)		495,899,844	402,491,030	419,210,506	400,371,442	431,919,553	-3.4
잉여금 (A-B)	소 계	143,209,475	160,329,003	163,208,133	189,687,761	252,032,777	15.2
	이 월 금	82,210,171	89,886,400	76,377,846	75,759,750	83,272,311	0.3
	보 조 금 집행잔액	3,816,060	4,323,107	4,796,531	4,891,696	3,918,730	0.7
	순 세 계 잉 여 금	57,183,245	66,119,496	82,033,756	109,036,314	164,841,736	30.3

(문제점)

○ 2017년도에 발생한 총 잉여금은 252,032,777천원으로 총 세입액의 36.8%를 차지하고, 그 중 순세계잉여금은 164,8421,736천원으로 65.4%를 점하고 있으며,

○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의 평균증가율이 30.3%에 달하고 있음.

○ 순세계잉여금은 세입 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중 불용액 발생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하여 발생되고 있는 바, 이는 예산운용 계획을 잘못 수립하였거나 과다하게 설정하였다는 의미로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이라 할 수 있을 것임.

(개선 및 권고사항)

○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재정분석지표에서 순세계 잉여금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

○ 따라서 계획된 사업이나 시책들을 적기에 차질 없이 추진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잉여예산을 최소화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더욱더 높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 할 것임.

2. 거창 예술인의 집 활용 대책 강구

(현 황)

○ 사업개요

◦ 기 간 : 2015.8.17 ~ 2016. 6. 30

◦ 위 치 : 남하면 대야길 88-19 (대야리 1754번지)

◦ 규 모 : 대지 604.9㎡, 연면적 248㎡

- 1층(43평) : 전시실, 세미나실, 강의실 , 사무실, 야외데크

- 2층(32평) : 안방(서재), 손님방, 거실, 주방, 옥상 데크 등

◦ 사 업 비 : 888 백만원 (군비 100%)

○ 조성목적 : 출향문인 집필공간 등으로 활용

(문제점)

○ 2016년 6월 30일 건물 준공 이후, 조성목적에 대한 군민 공감대가 부족하다거나, 특정인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는 여론 등으로 인해 당초 목적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음.

○ 그동안 문학인 간담회나 소통 한마당 토론회 등 활용대책 강구를 위해 수차례 여론 수렴활동을 해 왔지만, 적절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음.

○ 또한 관리 인부임, 운영비, 공공요금 등 건물 유지 관리비가 과다하게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어, 타 용도로 사용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됨.

(개선 및 권고사항)

○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한 훌륭한 시설인 만큼 문화예술단체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적절한 활용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 당초 목적이나 아니면 타 용도로도 적절한 활용대책을 강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매각하는 등 조속한 기일 내 대안을 강구하기 바람.

3. 근대 의료박물관 운영 활성화

(현 황)

○ 기본현황

◦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시장1길 32 (옛. 자생의원)

◦ 사업기간 : 2011. 1 ~ 2016. 12

◦ 규 모 : 대지 962㎡, 건물 4동 451.2㎡

◦ 사 업 비 : 2,766백만원 (국비 400, 군비 2,366)

◦ 공간구성 : 의원 본관, 주택동, 병동, 야외

○ 운영사항

◦ 2016년 12월 27일 “거창 근대의료박물관”으로 개관하였으나, 등록박물관 구비요건 미 충족으로 거창박물관에서 직영하면서, 공무직 1명이 상주 근무하고 박물관 학예연구사 겸임 근무

○ 운영실적

◦ 의료인 직업 체험교실 운영 : 중·고생 월 20명

◦ 거창도서관 문화강좌 대관 운영 : 8개 강좌 주 3회 운영

◦ 2018년 4월 5일 현재까지 누적 관람객수 : 5,190명

(문제점)

○ 그동안 일반 관람객 이용 외에도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의료인 직업 체험교실 운영, 어린이 독서 연구회 및 거창도서관 문화강좌 대관 등 시설 활용도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 운영초기라고는 하지만, 일반 관람객이 월 평균 350명 정도에 불과하고, 앞으로도 계속 관리 인력을 고정 배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 병동 일부 공간은 적절한 용도를 정하지 않고 비워 둔 상태로 있음

(개선 및 권고사항)

○ 본 시설은 의료사적으로나 사회사적 또는 건축사적으로도 그 의미가 매우 크고 소중하며, 또한 희소가치도 크다 할 것임.

○ 따라서 각종 매체나 블로그 등을 통해 대.내외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아울러 서울우유 견학과 박물관 관람객을 연계하여 본 시설 방문자가 점차 증가되도록 조치해 나가고,

○ 아울러, 현재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병동 일부 공간에 대해서도 활용 방안을 강구하는 등 본 시설의 선량한 유지관리는 물론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한편, 향후 사회 및 주변 여건 등을 탄력적으로 반영하여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기 바람.

4. 야생동물 피해방지 대책 강화

(현 황)

○ 야생동물 구제 및 밀렵감시 단체 : 3개 단체 60명

○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

◦ 동절기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 4개조 16명

◦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 대리 포획단 : 4개조 8명

◦ 수확기 피해 방지단 : 4개조 30명

○ 최근 3년간 야생동물 포획 및 피해보상과 예방시설 설치현황

<포획 보상금 지급현황>

(단위 : 마리/원)

년도	계	멧돼지	고라니	예산액
2017	1,309 / 45,000	768 / 35,180	541 / 9,820	45,000
2016	1,337 / 41,000	464 / 23,200	873 / 17,460	41,000
2015	674 / 20,350	229 / 11,450	445 / 8,900	20,350

* 멧돼지 50,000원/마리, 고라니 20,000원/마리
* '18년 예산: 군비 50,000천원(마리당 멧돼지 7만원, 고라니 3만원)

<농작물 피해보상 현황>

(단위 : 건/천원)

년도	계	벼	사과	기타
2017	112 / 38,148	56 / 8,904	16 / 9,431	40 / 19,813
2016	114 / 64,550	47 / 28,374	25 / 17,080	42 / 19,096
2015	60 / 39,182	16 / 7,020	24 / 21,557	20 / 10,605

<인명 피해보상 현황>

(단위 : 건/천원)

년도	계	뱀	멧돼지	기타
2017	8 / 2,983	7 / 2,483	1 / 500	
2016	18 / 5,293	17 / 5,267	1 / 31	
2015	5 / 825	5 / 825	-	

<피해 예방시설 설치현황>

(단위 : 건/천원)

년도	계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조류퇴치기
2017	**137 / 183,624**	111 / 124,270	17 / 47,090	9 / 12,264
2016	**137 / 156,025**	130 / 148,375	-	7 / 7,650
2015	**112 / 132,349**	108 / 125,059	-	4 / 7,290

(문제점)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 방지단 운영은 물론 피해 예방시설 설치 등 적지 않은 예산 투입과 아울러 다각적인 시책들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여 농민들의 원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설정이므로 이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그리고 야생동물 보호와 유해 야생동물 포획 업무간 형평성 충돌 발생에 따른 혼선이 야기되기도 함.

(개선 및 권고사항)

○ 계속 늘어나는 개체수 조정을 위해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을 대폭 인상

(예) 멧돼지 1마리 : 70,000원 ⇒ 100,000원

고라니 1마리 : 30,000원 ⇒ 50,000원

○ 전기 울타리 등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확대 추진

○ 농작물 피해예방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권역별 피해 예방시설 설치 적극 권장

《성과보고서 분야》

1.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보완

(현 황)

○‘성과보고서’는 전년도 예산편성(성과계획 수립)에 해당연도(예산집행)의 목표치를 다음연도에 사업실적을 토대로 성과목표의 달성여부, 미흡원인 등을 분석·보고하여 환류토록 하고 있음.

○ 거창군에서는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면서 부서별로 추진하는 모든 정책사업 중 1개의 전략목표를 정하고, 이의 달성 수단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음.

○ 2015년 ‘성과계획서’가 시범작성 된 이후 2016년에야 전국적으로 ‘예산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가 작성 제출되어 올해로 3년차를 맞이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 성과관리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여 사업목적과 명확히 연계된 결과 지향적 지표작성, 신뢰성 제고를 위한 충실한 성과분석, 목표달성의 구체적인 근거 제시 등이 미흡한 실정임.

(문제점)

○ 거창군의 업무계획과 예산의 성과계획 수립 과정을 살펴보면 전 부서 ‘주요업무계획’ 수립 후 예산안이 확정되면,

다음연도 초에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후 이를 바탕으로 편성된 예산안이 확정되고 나면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거창군의 ‘비전과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부서에서는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야 할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이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정책사업목표(과제)와 성과지표(이행과제)를 정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2017년도 주요업무시행계획’과 ‘예산의 성과계획서’ 확인 결과 전 부서 공통으로 업무시행계획과 성과계획의 정책사업 목표와 성과지표가 서로 상이하고 업무가 이원화 되어 이로 인한 단위사업 간 연계성 미흡으로 당초 의도했던 전략목표 달성이 어려움이 예상됨.

○ 특히 업무시행계획에서 각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핵심사업인 76건의 현안·역점사업과 70건의 신규·특수시책 확인결과 이러한 핵심사업이 ‘2017년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누락되고 반영된 사례는 없었음.

(개선 및 권고사항)

○ 거창군에서는 매년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을 수반한 단위사업에 대해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동시에 본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본예산이 확정된 후 ‘주요업무시행계획’ 수립과 함께 예산 변경부문에 대한 성과계획의 수정계획을 수립 토록하고,

거창군의 미션→비전→전략목표→정책사업 목표→단위사업(이행과제)이 서로 연계성이 있도록 업무계획을 토대로 예산 성과계획을 작성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2018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시 ‘주요업무시행계획’과 연계시켜 줄 것을 권고함.

2. ‘예산의 성과계획’의 ‘수정계획’ 미 작성

(현 황)

○‘예산의 성과보고서’ 작성 기본방향은 ‘성과계획서’와 일치되도록 작성(임의변경 금지)하고 ‘성과보고서’의 신뢰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충실한 성과분석과 목표달성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토록 하고 있으며,

○ 성과분석과 향후 개선사항에 대한 작성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성과 미달성, 초과달성(130% 이상)한 경우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성과지표의 적정성과 목표수준의 합리성에 중점을 두고 개선사항 등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음

(문제점)

○ 매년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함께 제출된 예산안이 군 의회에서 확정되면 당해연도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동시에 ‘예산의 성과계획’에 대한 수정계획도 아울러 작성하여야 함.

○ 그러나 거창군에서는 ‘2016년 예산의 성과계획서’가 작성되고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도 변경된 예산에 따른 ‘수정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2017년에는 3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수정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 ‘성과보고서’ 내용이 계획서와 일치하지 않았음.

(개선 및 권고사항)

○ 성과계획에 의한 성과보고서는 주요 성과지표에 대한 달성현황과 목표달성 과정, 미진한 사업에 대한 원인 분석과 향후 대책까지 포함하고 있어 성과지표에 의한 예산변경 시 당연히 수정계획서를 작성하여 계획서와 편성된 예산내역, 성과보고서가 일치되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문제가 있는 성과지표들은 성과보고서 지침에 의해 재설정, 재작성토록 하여 충실한 성과분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권고함.

3. 성과지표 설정 개선

(현　황)

○ 거창군에서는 '힐링과 승강기의 도시, 행복한 거창'이란 비전과 5개 항목의 군정목표 달성을 위해 전 부서에서는 전략목표(20개), 정책사업 목표(71개)와 단위사업 성과지표(215개)로 목표체계를 정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이중 초과달성 13개, 달성 164개, 미달성 지표는 38개로 확인되었으나, 전부서에서는 성과관리체계 운영전반의 적정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문제점)

○ 성과목표 또는 관리체계가 지향하는 목적을 실제로 달성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산, 인력 등 투입물의 양을 나타내는 투입(집행율),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산출물의 양을 나타내는 과정(진도율), 사업완료 후 나타내는 산출, 산출물을 통해 궁극적인 사업의 효과, 정책이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결과지표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성과지표 설정 내용을 확인한 결과 목표치가 적극적인 업무수행이나 노력 없이 손쉽게 100% 달성될 수밖에 없는 지표를 설정하거나 성과목표치 하향설정, 타당한 사유 없이 성과지표 측정방법 임의 변경, 성과측정 시 적용한 측정방법 또는 성과지표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등 전 부서 공통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됨.

(개선 및 권고사항)

○ 예산의 성과보고서인 만큼 투입예산과 관련된 지표를 개발하여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투입 및 과정지표로 관리 운영되고 있는 지표들은 결과 중심적 지표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리고, 실적에 대한 검정은 좀 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권고함.

《수범사례》

□ 행사·축제성 경비 총액한도액 운영

○ **목　　적** : 무분별한 행사·축제의 확대를 방지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내실 있는 육성

○ **운영기간** : 2017년 1월 ~ 12월(연중)

○ **대　　상** : 행사·축제성 경비 4개 통계목

○ **방　　법**

◦ 군 총액 한도액을 설정하고, 한도액 내에서 부서별 행사·축제성 경비 편성

◦ 모든 행사·축제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신규 행사·축제는 규모, 투자대비 효용성 등 종합적 검토

○ **총액 한도액 대비 절감액** : 9억원(우리군 한도 65억원, 편성 56억원)

□ 예산 · 회계 실무능력 향상 교육(최초)

○ **목　적**

신규공무원 및 예산회계 담당자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외부강사를 초빙하지 않고 실무담당자가 직접 교재 제작부터 강의까지 추진함으로써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능력 향상

○ **교육개요**

◦ 일　　시 : 2017. 5. 16 ~ 5. 17(2일간)

◦ 장　　소 : 사천시 남일대 리조트

◦ 대상인원 : 44명(신규 임용 및 예산·회계담당 공무원)

◦ 주　　관 : 기획감사실(예산담당)

○ **기대효과**

◦ 교육내용 만족도 설문조사 : 95.4% 만족

◦ 실무위주 맞춤형 교육으로 군정에 대한 이해도 향상

◦ 내부강사 활용으로 눈높이 교육 공감대 형성 및 강사 초빙 예산절감 효과 거양 등

Ⅳ.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내용

1. 세외수입 징수대책 미흡

(1) 개선 및 권고사항

○ 이월 체납액이 전년대비 19.3% 증가되었고, 특히 자동차 관련 체납이 46.9%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징수 전담조직을 설치 운영하여 세수증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바람.

(2) 조치결과 및 검토의견

○ 세입관리담당내의 인력을 충원하여(1→2명) 전체적인 세외수입을 총괄관리하고,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한 결과

○ 이월체납액이 전년대비 7% 감소하였으며, 자동차 관련 체납액도 전체 체납액 대비 4.4% 감소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앞으로도 세외수입 전담조직 설치 운영 등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겠음.

2. 거창읍 시가지 주차난 해소 및 가로환경 개선

(1) 개선 및 권고사항

○ 읍 시가지 주차단속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주차난해소를 위해 주택밀집지역에는 별도의 부지를 확보하는 등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토록 하고,

○ 아울러 터미널 주변에도 공영주차장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의 이용율을 더욱더 높혀 나가야겠음.

○ 또한 읍 시가지 보도블럭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시가지 가로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겠음.

(2) 조치결과 및 검토의견

○ 읍 시가지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한 연중 상시단속과 아울러 거창읍 죽전마을회관 주변에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터미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2019년도 지역발전 특별회계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신청 중에 있으며, 현재 무상운영 중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이용율이 1일평균 90%정도로 양호한 편임.

○ 아울러 시가지 가로환경 개선을 위해 7개소 4,755m의 인도 정비사업을 시행하였음.

○ 그 외에도 건축물 부설 주차장 일제조사 및 단속실시, 건설기계 주기장 확보대책 마련,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운영 활성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겠으며,

○ 특히 송정지구 도시개발 구역내 확보되어 있는 4필지 5,553.1㎡의 주차장부지를 매입하여 공영 무료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주차수요 파악을 위한 용역실시 결과를 도시계획 재정비시 반영하여 공영 주차장 확충계획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등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서, 날로 증가하는 주차수요에 적극 대처해야 할 것임.

3. 대형 계속사업 추진지연

(1) 개선 및 권고사항

○ 최근 시행중인 스피드 익스트림타운 조성사업을 비롯한 6건의 대형 사업들은 행정절차 이행지연, 집단민원 발생, 인근 주민과의 협의지연 등의 사유로 대체로 추진상황이 부진한 실정이므로,

○ 향후 대규모 장기 계속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계획단계에서부터 추진과정에 예상되는 문제점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추진하고, 확정된 사업은 차질 없이 시행하므로써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2) 조치결과 및 검토의견

○ 스피드익스트림 타운 조성사업은 전략환경 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봅슬레이 구간에 대하여 우선 발주하여 현재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 거창 항노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의 경우 조성계획 승인을 완료하여, 2018년도 지특예산에 1,000백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년 4월에 사업을 착수할 예정임.

○ 거창법조타운 이전사업은 2018년 3월 19일 『거창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갈등조정 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조정하고 군민 의견을 단일화하여 관계기관에 건의 할 계획임.

○ 아카데미 파크 조성사업은 학교별 단위사업 및 인도 정비공사를 시행중으로 현재 5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 대동리 회전 교차로 조성사업도 현재 공정율 80%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속히 마무리 할 계획임

○ 거창관문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은 2017년 7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미 협의된 토지에 대하여는 보상협의 또는 토지수용 절차 이행 등으로 연내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임.

○ 이와 같이 대부분의 대형사업들에 대하여 지금까지 필요한 행정 절차 이행, 소요예산 확보, 보상협의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고 있으나,

거창법조타운 이전사업의 경우에는 현재까지도 구치소 건립 찬·반 의견이 갈려 심각한 군민갈등을 초래하고 있지만, 확실한 대안이 없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므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조속히 해결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임.

4.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과다

(1) 개선 및 권고사항

○ 상·하수도 요금 적자보전에 대한 일반회계 전출금이 과다하므로, 원가 대비 현저히 낮은 상·하수도 요금을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화시켜, 지방공기업 경영 합리화는 물론 군비부담을 줄여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 조치결과 및 검토의견

○ 2017년 12월 상·하수도 요금을 5% 인상하였고, 일반회계 전출금도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 2018년 3월「지방공기업 경영개선을 위한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향상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하반기에 요금인상 5개년 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는 등 지방공기업 경영 합리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나가야 될 것임.

5. 성과보고서 작성 부적정

(1) 개선 및 권고사항

○ 본 예산편성시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본예산이 확정되면 예산 변경 부문에 대하여 성과계획서도 수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업시행 후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 시 환류 할 수 있도록 거창군 성과보고서 작성 지침을 보완하여 시행하기 바람.

(2) 조치결과 및 검토의견

○ 2018년도 본 예산 확정 후 예산변경부문에 대한 수정 성과계획서를 확정하였으며, 사업시행 후 성과보고서가 작성되면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환류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조직개편 등 성과계획서 변경사유 발생 시 마다 수정계획서를 작성 관리해나가야 겠음.

6. 군정 주요업무 평가계획서 작성 재검토

(1) 개선 및 권고사항

○ 성과계획에 의한 성과보고서는 주요 성과지표에 대한 달성현황과 목표 달성과정, 미진한 사업에 대한 원인분석과 향후 대책까지 포함하고 있어

○ 이러한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자체업무 평가를 실시한다면, 부서의 평가 업무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2) 조치결과 및 검토의견

○ 2017년도 예산성과계획서 성과지표를 반영하여 부서별 지표를 수정하였으며, 군정주요업무 최종평가 시 예산 성과계획서 지표와 일치하는 경우 증빙자료 제출 없이 성과보고서를 근거로 평가하고 있음.

○ 2018년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 시행계획 수립 시 예산사업의 경우 성과지표를 예산 성과계획서의 성과지표와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허용함으로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

7. 민간위탁 건물의 효율성 제고

(1) 개선 및 권고사항

○ 공공건물의 증가는 군민들의 생활에 보다 많은 편의를 제공한다는 의미도 있으나, 건물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은 군의 재정 압박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 거창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기존건물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건물의 관리 실태와 목적에 합당한 활용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익사업을 통해 유지관리 비용을 충당 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함께 새로운 건물 신축은 가급적 지양해야 될 것임.

(2) 조치결과 및 검토의견

○ 신축건물 취득 시 공유재산 심의기능을 강화해 재산 취득에 신중을 기해 나가고 있으며,

○ 구. 거창보건소 건물은 11개 입주단체 중 5건에 대해서는 유상 대부를 실시하고, 관리비용 절감을 위해 수변전 설비 부하시설 축소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유상임대를 통해 공유재산 임대수익을 창출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음.

Ⅴ. 금고의 결산

2017년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단위:원)

회 계 별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잔액
합 계		**683,952,329,476**	**431,919,552,838**	**252,032,776,638**
일반회계		610,800,628,184	398,098,997,416	212,701,630,768
특별회계		73,151,701,292	33,820,555,422	39,331,145,870
공기업특별회계		40,604,511,329	22,016,288,382	18,588,222,947
	상수도사업	15,635,811,951	8,470,453,932	7,165,358,019
	하수도사업	24,968,699,378	13,545,834,450	11,422,864,928
기타특별회계		32,547,189,963	11,804,267,040	20,742,922,923
	의료보호기금	834,800,150	751,002,100	83,798,05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404,503,305	392,595,840	11,907,465
	주차장관리	585,158,220	134,411,380	450,746,840
	산업단지조성사업	6,067,327,041	1,790,752,980	4,276,574,061
	수질개선	5,516,101,780	5,062,789,320	453,312,460
	댐주변지역지원사업	692,875,180	609,384,010	83,491,170
	농업발전기금	18,446,424,287	3,063,331,410	15,383,092,877

○ 2018년 1월 20일 현재 각 회계별 금고 보관 금액을 확인한 결과 2017년도 잔액과 일치하였음

○ 금고의 지정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과 거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에 의거해서 경쟁의 방법에 의거 3년 단위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지정하였으며,

자금의 안정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회계별로 구분하여 2개의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하여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음.